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근로자 포함〉

■ 정혜경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2183호)

2026. 7.

법 제 사 법 위 원 회

전문위원 박 혜 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정혜경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5. 8. 14.
3. 회 부 일 : 2025. 8. 18.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안이유

상법상 이사는 회사의 업무집행과 경영 의사결정을 책임지고 있으며, 회사의 이익을 우선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그러나 회사의 지속가능성과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는 단순히 회사의 이익뿐 아니라 전체 주주 및 근로자의 이익 또한 균형 있게 고려할 필요가 있음. 최근 이사가 특정 주주나 경영진의 단기적 이익만을 위해 의사결정을 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장기적으로 기업가치를 훼손하고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생계를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

이에 상법상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명확히 확대하여 회사뿐 아니라 전체 주주 및 근로자의 이익을 위하여 직무를 수행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이사의 책임성을 제고하고 기업 경영의 건전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상법상 이사가 직무를 수행할 때 회사의 이익뿐만 아니라 전체 주주의 공동 이익과 근로자의 이익까지 균형적으로 고려하도록 의무를 명시적으로 부여함(안 제382조의3).

Ⅲ. 검토의견

□ 현행법은 주식회사의 기관인 이사가 ①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 및 주주¹⁾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할 의무 및 ②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총주주의 이익을²⁾ 보호하여야 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도록 할 의무를³⁾ 부담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를 “이사의 충실의무”라고 함(제382조의3).⁴⁾

○ 이러한 “이사의 충실의무”는 종전에는 이사가 회사에 대하여 부담하는 의무의 형태로 규율되어 있었으나,⁵⁾ 지배주주와 일반주주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상황에서 일반주주의 이익이 충분하게 보호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⁶⁾ 2025. 7. 22. 법률 제20991호 개정으

1) 주주는 특정 주주나 개별 주주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의 실질적인 이익이 귀속되는 주체인 “주주 전체”를 의미함. 이하 이 규정에 대한 설명은 법무부, 「기업 조직개편 시 이사의 행위규범 가이드라인」, 2026.에 따른 것임.

2) “총주주의 이익”이란 주주 전체를 하나의 집단으로 보아 그 집합적인 이익을 보호한다는 의미로, 단기적 이익이 아닌 기업의 지속가능한 장기적 전망까지 고려한 장기적 이익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함.

3) “전체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할 의무”란 귀속되는 이익이 주주들 사이에서 공평하게 분배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지배주주와 일반주주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경우와 같이 주주간 이해관계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하며, 개별 주주를 기계적으로 동일하게 대우하려는 것이 아니며, 중요한 것은 회사와 전체 주주의 이익의 관점에서 정당화될 수 있는 사유 없이 일부 주주의 권익이 다른 주주에 비해 실질적으로 침해되었는지의 여부임.

4) 「상법」 제382조의3(이사의 충실의무 등) ①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 및 주주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이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여야 한다.

5) 「상법」(2025. 7. 22. 법률 제209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2조의3(이사의 충실의무)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6) 다만, 이러한 충실의무 규정은 이사와 회사 간 또는 지배주주와 일반주주 간 이해상충이 존재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모든 상황에 적용될 수 있음.

로 현재와 같은 형태로 규정되었음.

□ 개정안은 ①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근로자를 추가하고, ② 이사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총주주와 근로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전체주주와 근로자의 이익을 균형있게 고려하여 공정하게 대우하려는 것으로, 이사의 경영상 의사결정 과정에 있어 근로자의 이익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수 있게 하여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과 회사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려는 취지로 해석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입법목적을 가진 것으로 보임.

○ 다만, 이 법은 사원과 회사의 권리·의무, 회사의 의사결정, 회사의 업무집행 및 대표행위 등과 같이 단체의 내부적인 조직을 중심으로 하는 단체법적 규율, 회사와 제3자(다른 회사 등) 간의 거래에 관한 규정, 회사와 회사채권자 간의 법률관계에 관한 규정, 주식의 양도에 관한 규정과 같은 거래법적 규율 등을 하기 위한 목적에서 마련된 법령이라는 점에서, 개정안과 같이 근로자의 이익에 관한 규율을 이 법에 두는 것에 관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⁷⁾⁸⁾

7) 예를 들어, 회사 경영과 관련하여 근로자의 이익 등을 고려하기 위한 법률로는 우리사주조합 등을 규정하고 있는 「근로복지기본법」 등이 있음.

「근로복지기본법」 제32조(우리사주제도의 목적) 우리사주제도는 근로자로 하여금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해당 우리사주조합이 설립된 주식회사(이하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라 한다)의 주식을 취득·보유하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경제·사회적 지위향상과 노사협력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8) 이와 관련하여 「상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13059호, 2025. 9. 18. 발의)」은 개정안의 취지와 유사하게 이사가 직무 수행에 있어 회사의 근로자의 이익을 고려하도록 하고, 유지청구권의 요건 및 그 청구권자에 근로자 관련 부분을 추가하며, 회사의 해산이나 영업의 양도에 있어서 근로자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절차를 추가하려는 내용임.

현행	개정안
제382조의3(이사의 충실의무 등) ①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u>회사 및 주주</u> 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이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u>총주주의 이익</u> 을 보호하여야 하고, <u>전체 주주의 이익</u> 을 공정하게 대우하여야 한다.	제382조의3(이사의 충실의무 등) ① ----- ----- <u>회사, 주주 및 근로자</u> ----- -----. ② ----- ----- <u>총주주, 근로자의 권리와 이익</u> ----- <u>전체 주주와 근로자의 이익</u> 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 -----.

문의처

02)6788-5055